

1. 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이관하고, 기존 관리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오염 원인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법률 제16699호, 2019. 12.3. 공포, 2020.12.4.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범위를 규정(안 제2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내용은 해역별 오염 분포 현황, 현존량, 오염원 및 오염 차단대책, 수거·정화 방법 등으로 규정

나. 매립·고립을 위한 오염도 기준 규정(안 제12조·제13조)

폐기물의 매립을 위한 오염도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고립을 위한 오염도 기준은 폐기물 해양배출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다. 해양폐기물의 수거 방법·절차 규정(안 제17조~제20조)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을 해안·부유·침적 폐기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

라.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방법 및 사후관리 규정(안 제13조)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방법을 “해수유통 개선”, “수거·처리”, “저질 개선제 투입 및 피복 등의 개선조치”로 정하고, 정화 후 사후관리는 5년간 매년 1회 이상 수행하고, 재오염이 확인된 경우 관할관청에 오염물질 유입차단 등의 개선조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마. 현행 법령으로부터의 조문 이관(안 제3조·제26조·제28조 등)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에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와 관련한 조문을 이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타 : 1) 입법예고 전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해양폐기물

- 가. 해역별 분포 현황 및 현존량
- 나. 주요 오염원 및 오염 방지 대책
- 다. 수거 및 처분방법

2. 해양오염퇴적물

- 가. 해역별 오염 분포 현황
- 나. 주요 오염원 및 오염 차단대책
- 다. 정화사업의 필요성, 정화 범위 및 물량
- 라. 정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하거나 항공기·인공위성·무인

비행기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탐문·통계자료·문헌 등에 의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방법)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배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 신청) 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해양배출 방법

다. 폐기물운반선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

라. 폐기물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마. 그 밖에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의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폐기물 배출해역을 지정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정해역 및 지정기간
3. 배출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
4. 배출 허용량
5. 배출방법
6. 지정조건

제5조(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 전 단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인지를 검사할 때에는 별표 1의 처리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대행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7조(폐기물해양배출자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에 배출하려는 폐기물의 발생과정 및 월평균 발생량을 알 수 있는 자료
2. 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3. 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4.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해양배출하려는 폐기물이 별표 1의 처리 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1년 단위로 정하는 폐기물별 총 배출 허용량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폐기물의 육상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 제4호의 검토서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표 1의 처리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를 준용한다.

⑥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
3. 폐기물의 발생과정
4. 폐기물의 배출기간
5.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배출을 위탁할 업체
6. 배출한 폐기물의 양(최근 6개월 동안의 월평균 배출량이 신고한 양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폐기물해양배출자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자”라 한다)는 제7조제6항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해양배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

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법 제30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7조제1항제3호의 검사성적서(같은 조 제6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해양배출자의 폐기물 성분·농도 측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배출하려는 자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배출 폐기물의 성분·농도·무게·부피 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측정에 따른 검사성적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 폐기물해양배출자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탁하지 않고 직접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2.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자연재해 및 사고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보고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배출 결과보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 해양배출 일시·장소 및 원인
2.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및 추정량
3. 폐기물의 확산 방지 등 대응조치
4. 주변 해역의 시설물·구조물 및 해양기상 상태

② 제1항의 보고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정화 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정화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수거·정화 기간
2. 명령 이행의 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3. 오염 확산방지 조치 등 그 밖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고립처분의 허가신청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립처분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건설기계등록원부(고립처분시 건설기계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고립처분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신청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폐기물 고립처분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매립·고립처분의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매립 또는 고립은 별표 3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다만, 세부적인 매립 방법과 절차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② 폐기물을 매립 또는 고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매립의 경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

염우려기준

2. 고립의 경우 :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제1기준 제14조(해양지중저장 방법)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지중저장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해저 지질 구조 내에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해양지중저장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해양지중저장 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지중저장할 수 있는 해저지질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저면으로부터 800m 이상의 심도에 형성된 공극(孔隙)이 많은 암석층으로 상부가 진흙 등으로 물질 이동이 차단되는 구조
2. 가스·원유 등의 광물 채굴을 완료하고 남는 저류층의 빈 공간
3. 그 밖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지질 구조

② 해양지중저장 해역의 환경 및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수송 및 저장 방법, 수송·저장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안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2. 관할 해역의 해안폐기물 발생량 조사 및 수거·처리
3. 해안폐기물 수집인력의 활용
4.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5. 해안폐기물 수거 예산의 확보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해안의 폐기물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안 인접지역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하천을 통한 해양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매년 1회 이상의 실태조사
4. 정기적인 수거
5. 태풍, 집중호우 등 비상시 2차 오염 방지를 위한 수거
6.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수거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안폐기물을 직접 수거하거나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해양폐기물수거업자에게 위탁하여 수

거할 수 있다.

④ 해안폐기물의 수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해안폐기물의 현황과 발생원인 파악
2. 도서 등 수거 사각지대를 포함한 수거 대상지역 우선순위 결정
3. 투입 장비·인력의 배분
4. 오염 확산 방지 및 수거·운반시 안전 확보 지침 마련
5. 수거·처리

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거 명령과 그 조치 결과의 보고는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부유폐기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1. 부유폐기물 현황과 발생원인의 파악
2. 반기별 부유폐기물의 수거·처리 사업계획의 수립
3. 청항선, 어장청소선 등을 활용한 부유폐기물의 수거
4.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수거·처리
5. 부유폐기물의 수거·처리시 안전 확보
6. 차단막 설치를 통한 부유폐기물의 확산 방지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부유폐기물의 수거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 명령과 그 조치 결과의 보고는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9조(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등) ① 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침적폐기물을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1. 침적폐기물 분포 현황과 발생원인의 파악
2. 해양환경 및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수거 우선순위 선정
3. 침적폐기물 수거·처리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4. 침적폐기물의 수거·처리시 안전 확보
5.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수거·처리
6. 침적폐기물의 수거·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방지 조치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거 명령과 그 조치 결과의 보고는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0조(해양폐기물 조사·수거를 위한 선박 및 시설 운영기준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의 효과적인 조사·수거 등을 위하여 청항선, 어장청소선, 환경관리선 등을 건조하거나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조사·수거 등을 위한 선박 및 시설의 세부적인 운영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제21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퇴적물의 자연정화 촉진을 위한 해수유통 개선 조치
2.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처리
3.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저감을 위한 저질개선제 투입 및 피복 등 환경개선 조치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거된 오염퇴적물의 안전한 처리 및 처분
2.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방지 조치

제22조(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계획서)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화하고자 하는 해역의 위치 및 범위
2.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정도 및 정화물량
3. 정화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방법
4. 정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의 방지대책
5. 정화기간
6. 정화하고자 하는 해역과 그 주변해역에서의 어촌계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서
7. 정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정화된 퇴적물의 처분 방법

8. 정화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화해역의 위치 및 범위
2. 정화물량 및 정화방법
3. 정화기간
4. 정화 부산물 및 정화된 퇴적물의 처분 방법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정화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3조(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를 위해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시료 채취 및 분석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그 밖에 정화 기준, 범위 및 절차 등 정화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사후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5년간 매년 1회 이상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년간의 조사를 수행한 결과 더 이상의 오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육상에서 유입된 오염원으로 인한 정화사업 구역의 재오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 구역 및 유입하천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오염물질 유입차단 등 환경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정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오염도 조사방법은 제23조제1항을 준용하며, 조사내용과 제3항에 따른 정화사업 효과의 평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준설물질의 활용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설물질을 활용하려는 자는 준설물질활용사업의 착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후단의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용 대상 물질 및 용도

2. 활용 대상 물질의 양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준설물질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준설물질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선박·장비 및 설비 등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영 제11조제4항의 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폐기물해양배출업에만 적용한다.

1. 대표자(법 제23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2.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보유 기술능력 변경
3.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보유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의 변경
4. 운반폐기물의 종류, 적재지 및 배출예정 해역
5. 저장시설의 구조 및 저장능력
6. 폐기물 운반선, 폐기물 운반선에 설치된 선박자동식별장치 또는 배출정보저장장치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변경)신청서에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제1항제4호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서 폐기물의 해양배출 전
3. 제1항제5호의 경우 : 변경된 저장시설의 사용 개시 전

제28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처리실적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에 폐기물수탁 및 해양배출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1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운반하는 선박에 폐기물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수거업자”라 한다)와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

· 처리실적서에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을 운반하는 선박에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 : 별지 제16호서식
2.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3.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기록부 : 별지 제18호서식
4.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실적서 : 별지 제19호서식
5.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대장: 별지 제20호서식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제29조(폐기물의 보관·관리)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배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붕괴, 화재, 폭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된 저장시설에 보관할 것

2. 별표 2에 규정된 배출해역 및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할 것
3. 누구든지 제2호의 저장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4. 저장시설로부터 폐기물이 새어나오거나 넘쳐흐르지 아니하도록 보관할 것
5.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악취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제30조(폐기물 인계·인수서의 제출 등)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 인계·인수서를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서는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처리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게의 재위탁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처리

4. 그 밖에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육상에서의 처리

제32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폐기물관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
3.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폐기물해양배출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합병의 경우만 해당된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된다)

제33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4조(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6의 인력·설비·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변

경)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 국립수산물과학원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적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전문기관의 지정 변경) ①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

2. 기술인력 보유현황

3. 시설·장비 보유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전문기관 지정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기관지정서의 기재사항을 고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7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필요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폐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안폐기물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적폐기물
5.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안·부유·침적폐기물

의 수거 실적

2. 법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실적

3. 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현황 및 해양폐기물관리업자별 해양폐기물등의 처리 실적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인계·인수서

5. 그 밖에 해양폐기물등의 배출·수거·정화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를 “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역별 배출기준은 별표 4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을 “영 제5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되면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을 “되면”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을 “받은”으로 한다.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표자(법 제74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2. 기술요원 보유현황
3. 선박 및 항해구역
4. 설비의 구조 및 설비능력

②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관련되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제115조제7항”을 “법 제115조제7항”으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을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을 “제출받은”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76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제1항제2호 중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에

다른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폐기물수거업,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시행규칙 별표 6”을 “시행령 별표 1”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4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위탁처리계약서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 기준(제3조 관련)

1.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폐기물(mg/kg, 건중량 기준)

구분	제1기준	제2기준
유분(광유류)	10,000	2,000
시안화합물	200	40
페놀류	4,000	800
크롬 또는 그 화합물	1,850	370
아연 또는 그 화합물	9,000	1,8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2,000	400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20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1
유기인화합물	100	20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45	29
납 또는 그 화합물	1,100	220
폴리염화비페닐 - 2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52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01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1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3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53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80	0.15	0.03
나프탈렌	4	0.8
페난트렌	5	1
안트라센	4	0.8
벤조(a)피렌	4.5	0.9
플루오란텐	10	2.5
벤조(a)안트라센	5	1
벤조(b)플루오란텐	4	0.8

2.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나목 및 제2호가목의 폐기물(mg/kg, 건중량 기준)

구분	제1기준	제2기준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1
폴리염화비페닐 - 2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52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01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1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3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53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80	0.15	0.03

3.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폐기물(mg/kg, 건중량 기준)

구분	제1기준	제2기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370	80
아연 또는 그 화합물	410	2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270	6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10	2.5
수은 또는 그 화합물	1.2	0.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70	20
납 또는 그 화합물	220	50
니켈 또는 그 화합물	52	35
총 폴리염화비페닐	0.180	0.023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	45	4

비고

- 제1기준과 제2기준의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제1기준을 넘는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제1기준 이하이면서 제2기준 이상인 폐기물은 배출적합성을 판정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밀평가를 거쳐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 폐기물종류별 처리기준에의 적합여부 판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의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총 폴리염화비페닐은 폴리염화비페닐 - 28, 52, 101, 118, 138, 153, 180의 합을 말한다.
-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조(a)피렌, 플루오란텐, 벤조(a)안트라센, 벤조(b)플루오란텐의 합을 말한다.

폐기물 해양배출 방법(제3조 관련)

배출해역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	배출방법
갑해역 전역	시멘트로 고형화 처리한 것	집중식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동해병, 서해병, 동해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폐기물	확산식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동해병, 서해병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폐기물	확산식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동해병, 서해병, 정해역 전역, 무해역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폐기물	집중식처리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비고

1. 해양배출 시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시멘트는 수경성시멘트를 사용할 것
- 나. 시멘트의 양은 콘크리트 1m³당 150kg 이상 혼합하고 균질하게 섞을 것
- 다. 시멘트로 고형화하여 양생한 후 1축의 압축강도가 100kg/cm² 이상일 것
- 라. 형상 및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할 것
 - 1) 부피와 1면의 표면적 비가 5 이상일 것
 - 2) 변의 길이는 최대와 최소의 비가 3 이하일 것
 - 3) 최소변의 길이는 30cm 이상일 것

2. 확산식처리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배출하여야 한다.

- 가. 해면 아래에서 배출되도록 할 것
- 나. 평균 대수속도 4노트 이상으로 항해하면서 배출할 것
- 다. 합성로프, 폐어구, 플라스틱류, 닻마, 고무제품, 머리카락, 동물의 털 등 이물질이 섞인 물건을 제거할 것
- 라. 갈아서 부수어 배출할 것(각질류를 제외한 수산물가공잔재물로 한정한다)

3. 집중식처리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배출하여야 한다.

- 가. 비중 1.2 이상의 상태로 배출할 것
- 나. 항해 중에 배출하지 아니할 것
- 다. 가루의 상태로 배출하지 아니할 것
- 라. 폐기물 또는 포장된 용기 등이 떠다니지 아니하도록 처리할 것

폐기물의 매립 또는 고립 처분 방법 및 절차(제13조제1항 관련)

1. 폐기물의 매립 방법 및 절차

- 가. 폐기물을 매립하려는 자는 호안시설을 설치하여 해역과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선박에 의하여 호안의 안쪽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을 종료할 때까지 선박의 항해구간에 한하여 호안시설 대신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상등수를 해양으로 배출하는 경우 부유물질이 흘러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폐기물을 매립하려는 자는 매립 이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시로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유해물질의 유출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고립 방법 및 절차

- 가. 고립처분하려는 자는 사전에 대상지역의 폐기물 해양 고립처분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나.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해저면의 함몰지에 폐기물을 넣고 그 위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질을 덮는다.
- 다. 고립처분하려는 자는 고립처분한 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시로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유해물질의 유출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기준(제26조제2항 관련)

1. 폐기물해양배출업

항목			기준				
폐 기 물 운 반 선	소유여부		소유(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		척수	1척 이상	
	요건		폐기물배출해역의 위치에 따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각 항행구역의 운항에 적합한 규모이상의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이어야 함				
	설 비	하역설비	가. 펌프 및 관: 폐기물의 적재 및 배출에 전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펌프전후의 관에는 개폐밸브가 장치되어 있을 것 나. 그 밖의 하역설비: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을 것				
		선저배출밸브	폐쇄된 상태에서는 수밀구조(水密構造)인 것으로 개폐감지장치가 밸브 밖으로 노출되지 아니할 것				
		선저개폐문	폐쇄된 상태에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또한 선체의 동요 등에 의해 개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을 것				
		그 밖의 장치	선박자동식별장치와 선박의 시간대별 위치, 속력, 침로 등 항행상황과 폐기물 배출밸브(집중식으로 배출하는 선박의 경우 선저개폐문)의 개폐여부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저장하는 장치를 갖추어 것. 이 경우 폐기물운반선이 부선인 경우에는 해당 부선에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공통사항	해당 선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성상 및 배출방법에 따라 하역설비, 선저배출밸브, 선저개폐문 등의 설비중 적절한 것을 갖추어 것				
	구 조	화물창	가. 화물창에는 선체의 동요 등에 의하여 폐기물이 유출 또는 흘날리지 아니하도록 창구덮개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나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노출된 갑판에 폐기물을 싣는 선박에 있어서는 적절한 방책 및 결박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저준설토사 또는 조개껍질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물창에 밸러스트수를 적재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해당 화물창의 세정장치가 있을 것				
저 장 시 설	소유여부		소유(전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				
	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적재지별로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됨				
	규모		주된 적재지(적재량이 가장 많은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폐기물운반선 중 최대 규모의 선박 총톤수에 1㎥를 곱한 용량에서 부속선의 폐기물적재용량을 뺀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주된 적재지가 아닌 곳에서는 폐기물운반선 중 최소 규모의 선박총톤수에 1㎥를 곱한 용량에서 부속선의 폐기물적재용량을 뺀 용량 이상일 것				
	구 조 및 설 비	구조 및 설비기준		빗물 등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폐기물의 저장량을 계측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구조적으로 압력·외력 등에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함			
		안 전 기	철재 구조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6의 기준 중 IV, V, VI, VII, VIII, XII, XIII, XIV호를 준용할 것			
			콘크리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를 것			

		준	트 구조물	
			부선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를 받을 것

비고

1. 수저준설토사·조개껍질류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의 운반을 전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선박을 폐기물운반선으로 할 수 있고, 저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폐기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운반선에 직접 싣는 경우에는 저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폐기물을 선적부두에서 폐기물운반선까지 운반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설비의 각 항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저장시설의 설치자는 "저장시설"란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를 정기적(최초 완공검사 후 10년, 그 후에는 5년마다)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5.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2008.1.18. 해양수산부령 제4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가 폐기물해양배출 허용량의 감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 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2. 해양폐기물수거업

항목			기준		
해양 폐기물 수거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길이	길이 24m 이상		
		면적	순가용 갑판면적 100㎡ 이상		
	설비	원치	20mm × 300m 이상 권선/15톤 이상		
		겔로스	선박일체형 1식		
크레인 부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국적증서상 길이(m)×너비(m)×깊이(m)가 1,000㎥ 이상으로 총톤수 150톤 이상		
	설비	크레인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20톤 이상		
자본금			2억원(법인, 개인)		
기타			사무실(등록지역 소재)		

비고

1.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의 경우 선박운항권 일체를 위임받은 공유선박의 경우에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선박일체형이란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에 각각 영구적으로 장착된 것을 말한다.
3. 수거선의 순가용 갑판면적이란 선박구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고 개방되어 있는 갑판으로 수거작업과 수거물의 적재가 동시에 가능한 갑판면적이며, 상부에 수거물을 적재할 수 있는 높이 0.5m 미

만의 밀폐 가능한 맨홀 등은 인정하나, 높이 0.5m 이상인 갑판상의 장비·통풍구·연돌·기관출입구 및 선원통로 등과 상갑판에 부가하여 연장한 갑판은 면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크레인부선의 크레인은 건조(또는 개조) 시 선저에서부터 철 구조물로 기초화되어 고정되고 탑재된 후 크레인하부 회전판에 부착된 기어에 의하여 회전되는 크레인을 말한다.
5. 해양폐기물수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이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단법인 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장비 또는 선박을 해양폐기물관리업 간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해양폐기물수거업자가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해양폐기물수거선 및 크레인부선을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 수거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 가. 소유선박 외에 추가적으로 선박을 투입하는 경우
 - 나. 해양폐기물 수거 중 소유선박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수거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선급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다. 수거 해역의 수심, 해저지형 등의 영향으로 소유선박만으로는 수거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운 경우(해양폐기물의 안전한 수거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선박 외의 추가선박을 투입할 수 있음)
7. 자본금이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으로 본다. 다만,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항목		기준
장비, 선박		가. 다음의 수거선 중 1종 이상 소유 1) 펌프선(양수량 : 시간당 300세제곱미터 이상) - 유량계, 밀도계 및 유량과 밀도의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 각 1식 포함 2) 밀폐형 그레브식 수거선(2세제곱미터 이상, 56kW 이상) 3) 밀폐버킷이 장착된 굴삭기형 수거선(2세제곱미터 이상) 나. 양묘선(100마력 이상) 소유
자본금	법인	4억원 이상
	개인	8억원 이상
기타		사무실(등록지역 소재)

비고

1.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선의 경우 선박운항권 일체를 위임받은 공유선박의 경우에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수거선 중 펌프선의 펌프는 진공흡입식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선박에 영구적으로 장착되어야 한다.
3. 수거선 중 밀폐버킷이 장착된 굴삭기형 수거선의 굴삭기는 선박에 영구적으로 장착되어야 한다.
4. 수거선 중 밀폐형 그레브식 수거선과 밀폐버킷이 장착된 굴삭기형 수거선의 밀폐형 그레브와 밀폐버킷의 개폐부는 고무패킹 또는 동등한 성능의 재질이 설치되어 닫힌 상태에서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이 없어야 한다.
5.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사단법인 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위 표의 장비, 선박은 해양폐기물관리업 간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자가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수거선을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 수거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가. 소유선박 외에 추가적으로 선박을 투입하는 경우

나. 해양오염퇴적물 수거 중 소유선박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수거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선급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다. 수거 해역의 수심, 해저지형 등의 영향으로 소유선박만으로는 수거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운 경우(해양오염퇴적물의 안전한 수거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선박 외의 추가선박을 투입할 수 있음)

7. 자본금이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으로 본다. 다만,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 기준 중 경고(또는 시정명령)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바. 폐기물운반선을 2척 이상 보유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운반선에 대한 사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 횟수는 선박별로 합산한다.

2. 개별기준

가.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4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법 제24조	등록취소			

경우	제1항제4호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				
가) 기술요원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5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등록취소
나) 저장시설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등록취소
다) 폐기물운반선이 없게 된 경우		등록취소			
라) 폐기물운반선 또는 저장시설의 구조·규모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운반선 또는 저장시설 사용정지 1개월	운반선 또는 저장시설 사용정지 3개월	운반선 또는 저장시설 사용정지 6개월
마) 해양배출이 허용되지 않는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바)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에 배출한 경우		운반선 사용정지 1개월	운반선 사용정지 3개월	운반선 사용정지 6개월	
사) 폐기물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등록취소	
가) 폐기물해양배출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경고	저장시설사 용정지 10일	저장시설사 용정지 20일	영업정지 10일
나) 폐기물 보관·관리방법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22조에 따른 처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7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법 제2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경우					
2)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4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기술요원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선박, 장비 및 설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다) 해양폐기물수거업무 수행시 해양폐기물수거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수거선박 또는 크레인부선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22조에 따른 처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4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법 제24조	등록취소			

경우	제1항제4호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기술요원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선박, 장비 및 설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무 수행 시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선박·장비 또는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22조에 따른 처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제34조제1항 관련)

1.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가. 기술인력의 자격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서 환경학, 화학, 약학, 생물학, 위생학, 식품학, 해양학, 해양환경학 및 이와 유사한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2)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생물분류기사, 생물공학기사, 잠수산업기사 또는 해양환경 관련 동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기술인력의 수 자격기준에 적합한 3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책임자 1인은 기사자격 이상소지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음 각목의 장비는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1) 양방향음파탐사기(Side Scan Sonar) 2) 폐기물인양틀(폭 1m 이상, 무게 100kg 이상) 3) 잠수 및 수중촬영장비 4) 그 밖에 해양폐기물의 발생량 및 현존량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장비

2.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가. 기술인력의 자격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서 환경학, 화학, 약학, 생물학, 위생학, 식품학, 해양학, 해양환경학 및 이와 유사한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2)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생물분류기사, 생물공학기사 또는 해양환경 관련 동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기술인력의 수 자격기준에 적합한 3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책임자 1인은 기사자격 이상소지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가. 시설기준 퇴적물 오염도 검사시설은 면적이 120㎡이상으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해저퇴적물편)에서 정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장비기준 다음 각목의 실험장비는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1) 퇴적물 시료 채취기(표층 및 주상퇴적물 시료) 2) 흡후드 및 클린벤치 3) 건조기 4) 산분해장치(마이크로웨이브 또는 가열판) 5) 원심분리기 6) 원자흡광분석기,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분석기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7) 수은분석기 8) 시료 추출 및 정제장치 9) 시료 농축기 10)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11) 초순수 제조장치 12) 그 밖에 퇴적물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장비
--	--------

3. 해양배출 검사기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가. 기술인력의 자격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서 환경학, 화학, 약학, 생물학, 위생학, 식품학, 해양학, 해양환경학 및 이와 유사한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2)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생물분류기사, 생물공학기사 또는 해양환경 관련 동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기술인력의 수 자격기준에 적합한 3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책임자 1인은 기사자격 이상소지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생태독성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생태독성시험 담당자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가. 시설기준 검사시설은 면적이 120㎡이상으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해양폐기물편)에서 정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생태독성시험은 별도의 전용 실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장비기준 다음 각목의 기본장비 및 분야별 실험장비는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생태독성시험항목만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본장비 중 바), 아), 자), 타)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1) 기본장비 가) 시료냉장보관고(4℃ 이하, 용량합계 1,000ℓ 이상) 나) 순수증류수 제조장치(18MΩ/cm 이상) 다) 데시게이터(항습유지) 라) 냉동고(-20℃ 이하 냉동) 마) 건조기(100℃ 이상) 바) 회화로(450℃ 이상) 사) 화학분석용후드(2대 이상) 아) 회전식 증발농축기 자) 동결건조기(-60℃ 이하) 차) 자석교반기(회전교반 가능) 카) 전자저울(0.1 mg 이하 무게측량) 타) 질소농축장치 파) 수평형 진탕기 하) 수직형 또는 회전형 진탕기 2) 일반항목 가) 시안증류장치 세트 나) 페놀증류장치 세트 다) 용매추출장치(속슬렛) 또는 자동용매추출기 라) 가열판 또는 초단파시료분해기 마) 분광광도계 바)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ICP)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ICP-MS) 사) 수은 환원기화장치 또는 수은분석기 아)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ASS 또는 G

	C-MSD) 3) 특수항목 가) 용매추출장치(속슬렛) 또는 자동용매추출기 나)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 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ASS 또는 GC-MSD) 4) 생태독성시험항목 가) 마이크로톡스, N-tox, Luminstox 등 이와 동등이상의 해양성 박테리아 발광도 측정장비 나) 고속원심분리기 다) 저서성 단각류 배양기(내부 램프, 폭기장치 및 내부용량 700 L 이상) 라) 저서성 단각류 해수 여과장치, 저장용기(60 L 이상) 또는 해수 공급계약서 마) 수질측정기(암모니아, 온도, 염분, pH, 용존산소) 바) 표준채(300, 500 μm) 사) 현미경 또는 마이크로스코프 확대장치 또는 일반 확대경(3배율 이상)
--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제36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0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6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3.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3호	지정취소			
4.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조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4호	지정취소			
5. 법 제2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지정취소	
6. 법 제2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을 겸업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지정취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조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지정취소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신청내용	폐기물의 종류, 주성분 및 형태	종류	주성분	형태		
	해양배출계획	연간배출량	1회 배출량	배출주기		
		m³	m³			
	신청해역					
	배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배출방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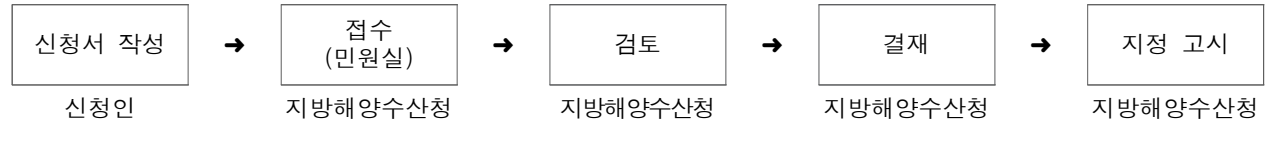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1부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해양배출 방법 다. 폐기물운반선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 라. 폐기물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의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신청해역”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해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해역 안의 구역을 “좌표”로 표시함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폐기물 해양배출 [] 최초 신고서
[] 변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최초신고시 15일 변경신고시 5일(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는 15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업종
	(전화번호:)	

신고내용	폐기물 종류(형태)	폐기물 성분	월평균 배출량 (무게, 부피)	배출 위탁업체명	배출기간	저장시설	
			kg m³			구조	저장능력(m³)
	폐기물의 오염도 (mg/l)	종류	COD	BOD	TN	TP	함수율(%)
		시험방법					
	배출해역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 []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최초신고 시 가. 해양에 배출하려는 폐기물의 발생과정 및 월평균 발생량을 알 수 있는 자료 1부 나. 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 1부(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함) 다. 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 1부. 라.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1부 2. 변경신고 시 가. 폐기물 해양배출신고 증명서 나.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함)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폐기물 종류(형태)”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폐기물의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하고, 폐기물의 형태는 액상 또는 고상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함
2. “폐기물 성분”란 폐기물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예: 굴 폐각, 갈치젓갈 가공 잔재물 등)을 기입함
3. “배출해역”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해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해역 안의 구역을 “좌표”로 표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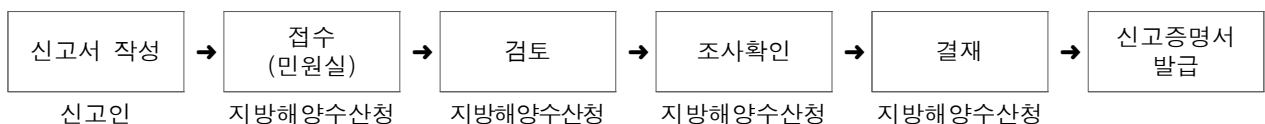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출자	① 상호(명칭)
	② 업종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사업장)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결과	⑥ 해양배출 사유
	⑦ 향후 육상처리계획
검토서 공개 동의 여부	⑧ 동의합니다. [] 당사자 [] 이해관계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당사자 [] 이해관계자

작성요령

⑥의 경우에는 육상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를 적습니다.

⑦의 경우에는 폐기물에 대한 해양배출 외의 육상처리계획을 적습니다.

⑧의 경우에는 이 검토서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업종			
배출 내용	폐기물 종류	폐기물 형태	폐기물 발생공정	저장시설 종류 및 저장능력(㎡)	월평균 배출량 (무게, 부피)	배출 위탁업체명	배출 기간
					kg m³		
배출 해역							
발급조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210mm×297mm(백상지 80g/ m²)

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

(1쪽)

제 호

배출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검사내용	검사항목 (예) 일반, 특수, 생태독성	
	폐기물 종류	용도 (예) 위탁처리신고용, 자가처리용, 기타
시료	채취장소 (예) 호퍼, 압록박스, 저장탱크 등	채취일시

함수율

검사항목	제1기준 (mg/kg, 건중량)	제2기준 (mg/kg, 건중량)	검사결과 (mg/kg, 건중량)	판정결과
유분(광유류)	10,000	2,000		
시아화합물	200	40		
페놀류	4,000	800		
크롬 또는 그 화합물	1,850	370		
아연 또는 그 화합물	9,000	1,8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2,000	400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20	4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1		
유기인화합물	100	20		
비소 또는 그 화합물	145	29		
납 또는 그 화합물	1,100	220		
폴리염화비페닐 - 2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52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01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1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3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53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80	0.15	0.03		
나프탈렌	4	0.8		
페난트렌	5	1		
안트라센	4	0.8		
벤조(a)피렌	4.5	0.9		
플루오란텐	10	2.5		
벤조(a)안트라센	5	1		
벤조(b)플루오란텐	4	0.8		
발광박테리아	-	대조구 대비 30% 이하	(%)	
저서성 단각류	-	대조구 대비 30% 이하	(%)	

상기 검사결과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의 폐기물(원료로 사용된 동·식물 폐기물)에 대한 검사성적입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 ○○○○○○○○○ (인)

주 소

(전화번호:)

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

(2쪽)

제 호

배출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검사내용	검사항목 (예) 일반, 특수, 생태독성	
	폐기물 종류	용도 (예) 위탁처리신고용, 자가측정용, 기타
시료	채취장소 (예) 호퍼, 압출박스, 저장탱크 등	채취일시

함수율

검사항목	제 1기준 (mg/kg, 건중량)	제 2기준 (mg/kg, 건중량)	검사결과 (mg/kg, 건중량)	판정결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5	1		
폴리염화비페닐 - 2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52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01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1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38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53	0.15	0.03		
폴리염화비페닐 - 180	0.15	0.03		
발광박테리아	-	대조구 대비 30 % 이하	(%)	
저서성 단각류	-	대조구 대비 30 % 이하	(%)	

상기 검사결과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나목 및 제2호가목의 폐기물([어류·패류의 젓갈 또는 그 폐기물, 수산가공잔재물(조개껍질 등 각질류 제외) 및 집중식 처리의 수산가공잔재물 또는 어장정화·정비시 수거되는 조개껍질 등으로서 각질류의 것])에 대한 검사성적입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 ○○○○○○○○○ (인)

주 소

(전화번호:)

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

(3쪽)

제	호			
배출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검사내용	검사항목 (예) 일반, 특수, 생태독성			
	폐기물 종류		용도 (예) 위탁처리신고용, 자가측정용, 기타	
시료	채취장소 (예) 호퍼, 압출박스, 저장탱크 등		채취일시	

함수율

검사항목	제1기준 (mg/kg, 건중량)	제2기준 (mg/kg, 건중량)	검사결과 (mg/kg, 건중량)	판정결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370	80		
아연 또는 그 화합물	410	200		
구리 또는 그 화합물	270	6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10	2.5		
수은 또는 그 화합물	1.2	0.3		
비소 또는 그 화합물	70	20		
납 또는 그 화합물	220	50		
니켈 또는 그 화합물	52	35		
총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0.180	0.023		
총다환방향족탄화수소	45	4		
발광박테리아	-	대조구 대비 30% 이하	(%)	
저서성 단각류	-	대조구 대비 30% 이하	(%)	

상기 검사결과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의 폐기물(준설토)에 대한 검사성적입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 ○○○○○○○○○ (인)

주 소

(전화번호:)

폐기물해양배출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법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양도인, 피상속인, 합병 전 법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권리·의무 승계일			
권리·의무 승계사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1.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 2.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의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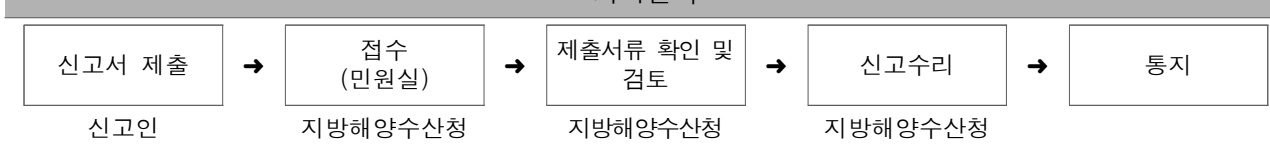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결과보고서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⑥ 폐기물의 해양배출 일시·장소	일시	장소	
⑦ 폐기물 해양배출 원인 (해면 및 기상상태 포함)			
⑧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⑨ 폐기물의 배출 추정량 (부피, 무게 등)	kg		m³
⑩ 확산방지 등 대응조치			
⑪ 주변 해역의 시설물· 구조물 및 해양기상 상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고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법인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작성방법
1. ⑦의 경우 자연재해 또는 사고 발생의 원인과 폐기물의 해양배출 불가피성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2. ⑩의 경우 배출된 폐기물이 주변 해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계획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3. ⑪의 경우 배출지역의 주변 시설물, 구조물 등의 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고립처분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장소				
폐기물의 종류				
면적 및 처리량	m ²		m ³	
목적				
처리 방법				
허가기간				
허가조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립처분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고립처분 계획서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 고립처분 해역의 개황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고립 방법 라. 폐기물 운반 및 고립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투입 기술인력 마. 폐기물 고립처분이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및 저감대책 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의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건설기계등록원부(고립처분시 건설기계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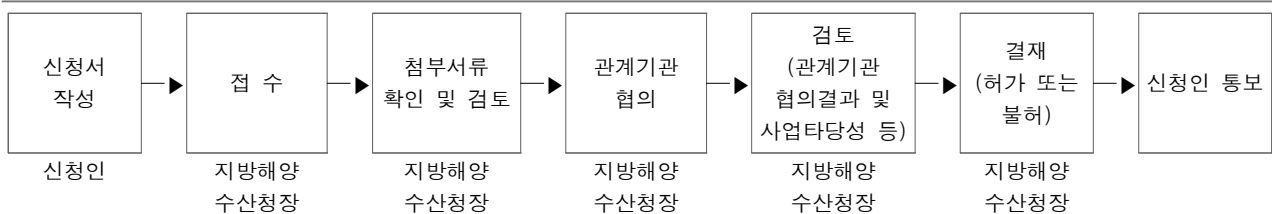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허가번호 제 호

폐기물 고립처분 허가증

허가대상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립처분을 허가합니다.

이
호
지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저장 목적				
저장 위치				
저장 면적 및 저장량			m ²	m ³
저장기간				
저장 방법				
누출 방지 및 사후관리 계획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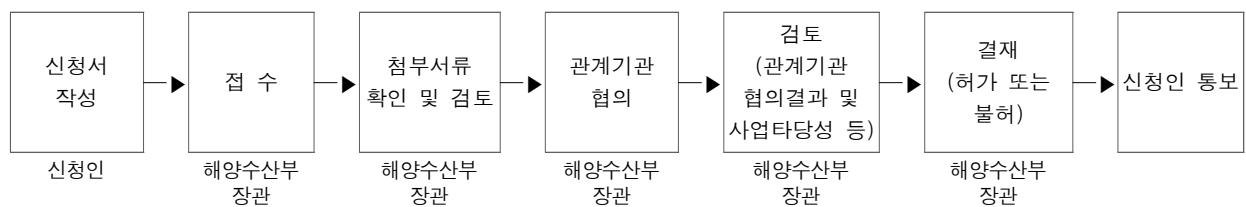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이산화탄소 스트림 격리 계획서 -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특성, 성분 및 양 - 해양지중저장 해역의 개황 -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포집, 운반 및 격리 방법 -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운반 및 해양지중저장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투입 기술인력 - 운반 및 저장에서의 안전성 확보계획 및 상시 모니터링 계획 - 해양지중저장에 따른 해양환경영향 및 영향 저감방안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의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허가번호 제 호

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허가증

허가대상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을 허가합니다.

$\frac{1}{2}$ $\frac{1}{3}$ $\frac{1}{4}$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최초 계획의 경우 가. 정화하고자 하는 해역의 위치 및 범위 나. 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정도 및 정화물량 다. 정화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방법 라. 정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의 방지대책 마. 정화기간 바. 정화하고자 하는 해역과 그 주변해역에서의 어촌계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서 사. 정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정화된 퇴적물의 처분 방법 아. 정화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변경 계획의 경우 : 변경 내용과 관련된 서류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제출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준설물질의 활용 ☐ 최초 ☐ 변경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출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대상물질의 종류		
대상물질의 양	kg	m³
활용 용도		
활용 계획		
사업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준설물질의 활용을 ☐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작성방법

1. '활용 용도' 란은 준설물질의 활용 용도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2. '사업기간' 란은 준설물질 활용사업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기간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해양폐기물관리업 [] 최초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최초등록 변경등록	신청 시 15일 신청 시 5일
------	-----	-----	------	--------------	---------------------------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자본금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운반 폐기물	폐기물 종류	적재지(주된 적재지)	배출예정 해역
-----------	--------	-------------	---------

저장시설	구조	저장능력(㎡)
------	----	---------

운반선 (주운반선/ 부운반선)	선박명 /	선박번호 /	선적항 /
	총톤수 /	선질 /	항해구역 /
	배출관련 설비 /	선박자동식별장치 /	배출정보 저장장치 /
	그 밖의 주요설비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 등록 [] 변경등록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최초등록 신청 시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다.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라. 선박명, 선박의 종류, 총톤수 및 항행 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마.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설비와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1부 바. 폐기물의 수집·운반·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사.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아.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 합니다)의 보유현황 증명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3.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210mm×297mm(백상지 80g/㎡)

[]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최초등록 신청 시 15일 변경등록 신청 시 5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자본금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또는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수거업의 [] 등록 [] 변경등록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최초등록 신청 시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 1부 라.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마.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의 보유현황 증명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3.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210mm×297mm(백상지 80g/㎡)

[]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최초등록 신청 시 15일 변경등록 신청 시 5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자본금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또는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 등록 [] 변경등록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최초등록 신청 시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u>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u> 1부 라.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마.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에 필요한 시설, 장치의 구조를 밝히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및 설계 계산서 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에 필요한 시설, 장치의 처리 공정도 사.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처리방법 및 처리공정, 환경관리계획 등을 설명하는 서류 아.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의 보유현황 증명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증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3.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210mm×297mm(백상지 80g/㎡)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

[]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

(앞쪽)

등록번호 제 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		등록연월일 . .
등록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무소) (전화:)		
배출 폐기물	폐기물종류		
	적재지 (주된 적재지:)		
	배출예정해역		
저장시설	구조	저장능력	m ³
폐 기 물 운 반 선	구분	주운반선	부운반선
	선박명		
	선박번호		
	선적항		
	총톤수		
	선질		
	항해가능구역		
	배출관련설비		
	선박자동식별장치		
	배출정보저장장치		
	그 밖의 주요설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등록번호 제 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증

1. 성명(대표자) :
2. 생년월일 :
3. 상호 :
4. 사업의 종류 :
5. 사업소의 소재지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등록번호 제 호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증

1. 성명(대표자) :
2. 생년월일 :
3. 상호 :
4. 사업의 종류 :
5. 사업소의 소재지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수탁									해양배출								
일시	위탁 업체명 (소재지)	업종	폐기물 종류	발생 공정	성상	수량 (㎥)	수탁 단가 (원/㎥)	저장 장소	선적 일시	선적 장소	폐기물 종류	성상	수량 (㎥)	출항 일시	배출 일시	배출량 (㎥)	귀항 일시 및 장소

210mm×297mm(백상지 80g/㎡)

[] 폐기물
[] 해양오염 퇴적물

등록번호	제 호	운반선명
1. 폐기물 또는 해양 오염퇴적물의 적재	적재일시	
	적재폐기물의 종류 및 양	
	적재장소	
2. 폐기물의 배출	배출개시일시 및 선박위치	
	배출종료일시 및 위치	
	배출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방법	
	배출소요시간	
3. 화물창의 세정	화물창식별기호	
	세정일시 및 소요시간	
	세정방법	
4. 세정수의 배출	배출개시일시 및 선박위치	
	배출종료일시 및 선박위치	
	배출세정수의 양	
	배출방법	
5.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폐기물배출	배출일시 및 선박위치	
	배출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상황 및 사유	
6. 1항차 소요시간	년월일시분 ~ 년월일시분 (시간 분)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성자 : 인

선장 : 인

작성 방법

1.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양은 kg 또는 m³로 표시할 것
2. 제3호의 '세정방법'란 호스를 사용한 수작업, 기계에 의한 세정, 화학세정 등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210mm×297mm(백상지 80g/m²)

법인명						
우편번호/		주소/				
과명/		과장/		담당/		담당자/
전화/		팩스/		이메일/		
[] 폐기물 []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실적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 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일자 (월)	수거업체명 (선명)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 종류	수거량 (kg)	처리량 (kg)	처리방법	처리 업체명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법인명 대표자 인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 폐기물 수거·처리대장
[] 해양오염퇴적물

수거 내역				처리 내역			
① 일자	② 종류	③ 수거 해역	④ 수거량 (톤)	⑤ 처리 방법	⑥ 처리량 (톤)	⑦ 처리 업체명	⑧ 보관량 (톤)

작성방법

1.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2. ①은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일자를 기재한다.
3. ②는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종류(합성로프, 폐어구, 플라스틱류 등)를 기재한다.
4. ③은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해역을 기재한다.
5. ④는 수거된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양을 기재한다.
6. ⑤는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방법(자체/위탁 처리)을 기재한다.
7. ⑥은 수거(잔재)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량을 기재한다.
8. ⑦은 수거(잔재)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업체명을 기재한다.
9. ⑧은 수거(잔재)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미처리량을 기재한다.
10. ①에서 ④까지는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처리확인증을 발급하는 날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폐기물 인계·인수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폐기물해양배출자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위탁장소					
	폐기물종류		위탁량 m ³ (kg)			
	폐기물성상 [] 고상, [] 액상					
	배출업자					
운반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차량종류		차량번호			
	수집·운반차량증 번호		운반일자 년 월 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저장시설					
	출항지					
	배출해역		배출방법 [] 확산식, [] 집중식			
확인인	배출자		운반자		배출업자	
	직위:		직위:		직위: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인계·인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배출업자)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배출자 및 배출업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 배출자, 운반자 및 배출업자는 폐기물의 배출위탁·운반 및 배출시마다 상대방의 기재내용과 대상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직접 확인한 후 자기가 적어야 할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3. '위탁장소'란에는 폐기물을 위탁할 당시에 폐기물이 저장되어 있던 장소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는다. 4. '폐기물종류'란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를 적는다. 5. '수집·운반차량증 번호'란에는 시·도 또는 지방환경관서에서 발급한 수집·운반차량증의 번호를 적는다. 6. '저장시설'란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아 저장하고 있는 시설을 적는다. 다만, 운반선에 직접 적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는다. 7. '배출해역'란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배출해역을 적는다.

210mm×297mm(백상지 80g/㎡)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 폐기물해양배출업자
[] 해양폐기물수거업자
[]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자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법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양도인, 피상속인, 합병 전 법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 소재지		
권리·의무 승계일			
권리·의무 승계 사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 1부. 3.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 1부(폐기물해양배출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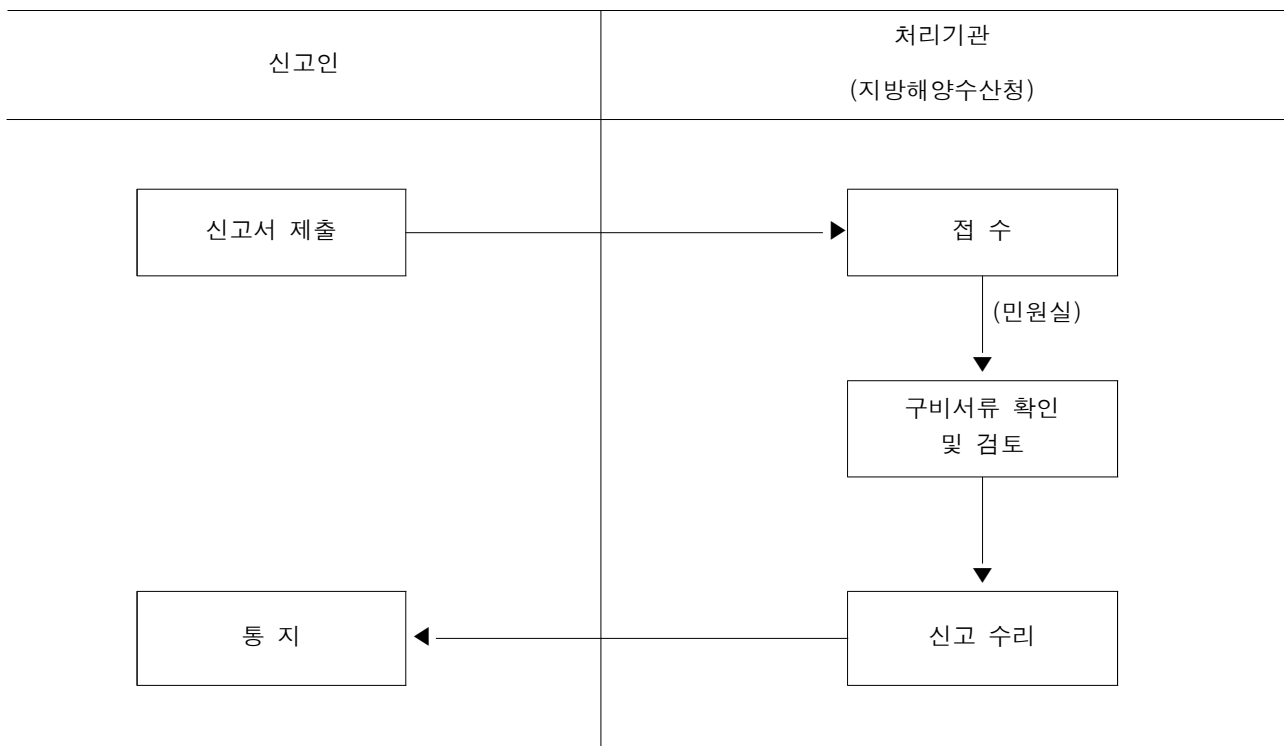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전문기관 ☐ 최초지정 ☐ 변경지정 신청서

☐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 해양배출 검사기관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최초지정 15일 변경지정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제35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 지정 ☐ 변경지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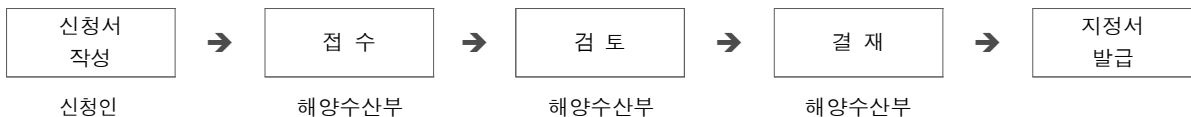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최초지정의 경우 가.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 수행 계획 1부 나. 인력·설비·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지정의 경우 가. 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지정 10,000원 변경 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2.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3.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전문기관 지정서

☐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 해양배출 검사기관

1. 상호(명칭)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3. 사무실 소재지 :

(전화번호:)

4. 실험실 소재지 :

5. 기술인력 현황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